

제공일자	2009. 6. 9	담당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수석(3775-9051)	연락처	3775-9013	총 2 매

제목 :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의 적정성 검토

근로자 수급권보호 차원,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 규제 재검토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퇴직연금 운용의 재량권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적절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규제체계가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의 적정성 검토』라는 CEO 리포트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에는 이익상충문제(본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등록기준, 선정기준, 계약기준, 적격기준 측면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규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기준은 부실금융기관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여 퇴직연금시장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시, 비전문 인력중심이 아닌 연금계리인력중심으로 인적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이유를 근로자에게 보고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 등 제도운용의 역량부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부실화되는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처럼 정량평가(수익률)이외에 정성평가(전문성, 서비스의 질, 건전성 등)를 고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은 **자행예금(고유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본래의 신탁개념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처럼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에 의한 자산관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은행의 자행예금 운용에 따른 방화벽(fire wall) 작동문제, 기존신탁개념과의 상충문제, 금융권역간 공정경쟁저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연금 및 신탁관련 법률, 투자 및 펀드관리, 기금적립, 전략적 자산배분 등 퇴직연금 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투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격기준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기금이 대형화되고 근로자들이 시장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절한 지배구조 확립과 수탁자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